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1호
Feb. 2025

보험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시사점 -

1.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원고는 2018. 12. 13.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발화세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화세대와 인근 세대, 공용부분 등이 연소 피해를 입음(이하 연소 피해를 입은 위 각 세대를 통칭하여 '피해세대')
- 원고는 2021. 1. 15.경까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보험금 44,724,813원을 지급하고, 피해세대 및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39,045,685원을 지출함
- 피고 보험 보통약관 중 제3조 제1호는 피고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 쟁점이 된 사안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2.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F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보험자대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90277 판결)

- 2심 법원은, F호 입주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원고 보험은 세대별 전유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해세대와 발화세대 모두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누린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발화세대 입주자를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보험 약관상 공동피보험자 간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는 피고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판결)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은, ① 원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고, ② 피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주요 설시이유는 아래와 같음

  - 원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함

  - 재난안전법령의 입법취지와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목적, 피고 보험계약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이익은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함

  -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3. 시사점

- 이 사건 판결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판단에 관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이 사건 판결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단일한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들의 보상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책임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게 되었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